

- 서울특별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서영진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2414호

다. 제출일자 : 2017. 3. 9.

라. 회부일자 : 2017. 3. 12.

2. 제안사유

-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별 제복의 종류 구분 및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삭제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8. 3. 16 ~ 2018. 3. 23

○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)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제복만을 규정하고,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등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2조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복의 착용의무, 제복의 종류,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¹⁾ 따라

현행 조례에서는 단속 담당 공무원 신분²⁾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복장형태를 정하고 제복의 세부사항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각 [별표 1] 및 [별표 2]에서 정하고 있음

- 다만, 현행 조례 [별표 1]과 [별표2]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 ‘여성’에 대해서만 근무복, 모자, 신발 등의 제복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지급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고, 제복을 제작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제 현장의 제복 착용

1)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(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) ① (생략)

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,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단속공무원의 신분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처럼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, 제복의 세부적인 재질, 제작방법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운영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제작시 디자인 등의 제작방법, 지급기준 및 현장여건에 대한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주·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